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청소년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규정과 함께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청소년활동의 지원을 위해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 (안 제4조)

나.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하는 민간기구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 (안 제5조, 제6조)

다. 청소년복지의 향상을 위한 노력 의무와 지원 근거 마련

- 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와 복지지원에 위한 근거 명시 (안 제7조)

라.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 의무와 지원 근거 마련

- 청소년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의무와 자율적인 감시고발 활동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3. 조 례 안 : 불 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27조, 제47조,
제49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제53조, 제54조, 제60조,
「청소년보호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T/F팀, 청렴정책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청소년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

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6.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7.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2. 청소년의 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문화예술 진흥, 동아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4. 청소년의 진로탐색, 특기개발을 위한 활동
5. 타 지역 및 해외 청소년문화 체험활동
6.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청소년과 청소년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7. 청소년의 애국심함양을 위한 안보교육 및 체험활동
8. 그 밖에 지역청소년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시장은 정부, 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시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
2. 청소년상담 등 위기청소년 관리를 위한 활동
3. 그 밖에 청소년복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 ①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과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선도활동 등 각종 예방활동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와 고발을 위한 순찰, 교육 등의 활동
3. 교내 폭력예방을 위한 인력 운영
4. 그 밖에 청소년유해환경 개선과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미경찰서장,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기관 공무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대표 등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출석 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5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장 청소년지도위원

제17조(위촉) 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구미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 및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동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수는 읍·면·동별로 9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5. 불우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과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임기 및 해촉)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증표 교부 및 관리) ① 지도위원에게는 별표의 증표를 교부한다.

② 지도위원이 해촉된 경우 증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 등 지원) 시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도위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수당·여비·교육기회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협의회 운영) ①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건의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동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구미시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읍·면·동별 대표 1명으로 구성하되,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도위원이 10명 이상인 읍·면·동은 2명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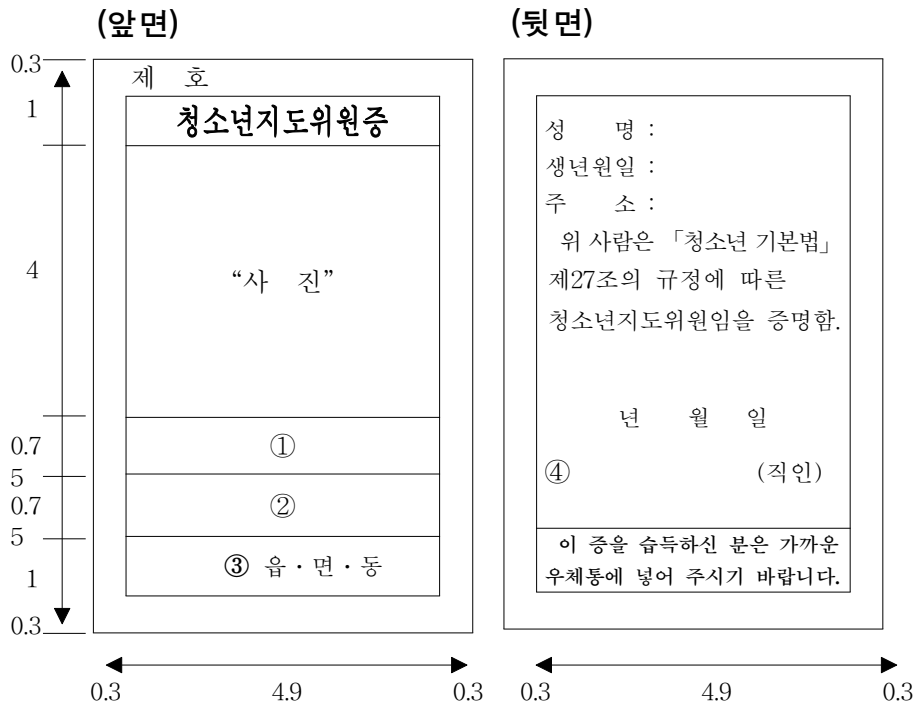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20조관련)



1. 지질은 인쇄용지 120g/m²하고 색상은 연두색으로 한다.
2. 사진규격(3cm×4cm, 탈모·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3. 용지규격 (가로×세로 = 5.5cm×8.1cm)
4. ①란에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 ②란에 성명
 - ③란에 소속기관명
 - ④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5. 신분증은 투명 P.V.C로 포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 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 의 설치·운영과 청소년지도를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목적) ----- -----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청소년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 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 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 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 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 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다.

6.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7.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

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2. 청소년의 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문화예술 진흥, 동아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4. 청소년의 진로탐색, 특기개발을 위한 활동
5. 타 지역 및 해외 청소년문화 체험활동
6.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청소년과 청소년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7. 청소년의 애국심함양을 위한 안보교육 및 체험활동
8. 그 밖에 지역청소년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신 설>

<신 설>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시장은 정부·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시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청

<신 설>

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
2. 청소년상담 등 위기청소년 관리를 위한 활동
3. 그 밖에 청소년복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

①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

5조에 따라 지역의 청소년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과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선도활동 등 각종 예방활동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와 고발을 위한 순찰, 교육 등의 활동
3. 교내 폭력예방을 위한 인력 운영
4. 그 밖에 청소년유해환경 개선과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신 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
용한다.

관련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

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소과 실 · 과		새마을과
입 안 자	과 장	김영준
	담 당	김영철
	담 당 자	심주희 (480-6822)